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7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정을호 · 조정식 · 문정복
차지호 · 김문수 · 박지원
위성곤 · 이재관 · 김준혁
이정문 · 박정현 · 전진숙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요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하는 교육감 등은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운영에 대해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사회”를 “교육의 중립성 및 사회”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실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제1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지원에”를 “경비 지원 및 경비 지원의 중단 내용, 기간, 정도 등에”로 한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감독을”을 “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로, “제1항과”를 “제1항 및 제2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설립·운영 등록을 한 이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주기,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u>사회</u>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 ⑤ (생 략) 제6조(결격사유) (생 략) <u><신 설></u>	<u>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u>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의 중립성 및 사회</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법인 또</u>

는 단체의 소속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② · ③ (생략)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 ·
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
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생략)
 <신 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
원) ① -----

----- . 다만, 대안
교육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
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
-경비 지원 및 경비 지원의 중
단 내용, 기간, 정도 등에-----

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학부모 대표, 지

역사회 대표-----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설립·운영 등록을 한 이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주기,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제1항 및 제2
항과-----

-----.

④ 제3항에-----

-----.

제2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24조(과태료) ① ----- ----- --<u>500만원</u>-----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일 <u>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u> <u>자</u> ② (현행과 같음)
--	---